

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02. 04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8. 02. 05

다. 상 정 일 자 : 2008. 02. 19 (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
제1차 도시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건축과장 오홍택)

가. 제안사유

구민들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내 입주자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상호간 분쟁민원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, 민원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하여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공동주택내 분쟁조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조정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분쟁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택법」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등

나. 예산조치 : 회의참석수당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반영

▷ 2008년 추정반영 : 7명 × 70,000원 × 4회 = 1,960,000원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07. 10 .8 ~ 10. 30(22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☐ 본 조례 제정 건은

- 최근의 주거환경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모되고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상호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, 분쟁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
-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인간의 원초적 기본욕구에 부응하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고
- 경남 진주시와 경기도 용인시를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중구, 서구, 동구 등 9개구에서 기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여타 시·구·군에서도 입법예고 등 준비 중에 있으며
- 특히, 「주택법」 등 관련법령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,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☐ 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5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